

# 중사자 윤리지침

홍길동요양원

# 종사자 윤리지침

## 1. 지침의 목적

유니실버요양원 종사자는 노인요양업무를 수행하여 수급대상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종사자는 윤리를 기본으로 하여 모든 노인요양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종사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대상자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윤리성을 지녀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몸이 불편하신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실버요양원 종사자(직원)가 평소 지켜야할 윤리와 규범을 정의하고 그 범주 및 행동강령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관련 직원이 모두 이를 준수토록 하기 위해 본 지침을 마련한다.

본 지침에서 '종사자'란 유니실버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즉 시설장,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및 조리사, 위생원 및 관리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종사자가 지켜야할 윤리의 대상은 시설 내의 모든 직원, 수급자, 보호자, 그리고 유니실버요양원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안성시 공무원, 지역사회 주민, 자원봉사자, 운영위원회 위원, 재화공급자 등)에게 해당된다.

## 2. 수급자에 대한 윤리 기본원칙

본 시설은 어른을 공경하고 노인장기요양의 성공적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의 미래에 이바지를 위한 사명감으로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

- 본 시설은 성별,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 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하지 않으며, 존엄한 존재로 대한다.
- 이용시작 및 이용종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한다.
-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

급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 한다.

- 수급자와 그 가족, 그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 한다.
-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한다.
-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 3. 개인정보

본 시설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료보장유형,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요구 관련 모든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수급자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와 시설이 개인과 공유하는 개인적인 비밀은 존중하고 보호한다.
- 개인적 정보제공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해당자에게만 제공한다.
- 수급자의 정보 공개가 필요한 경우 본 시설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다.
- 수급자의 정보가 담긴 문서를 폐기할 때는 신상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분쇄하여 폐기 한다.
- 수급자의 정보가 담긴 컴퓨터는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서류장은 잠금장치를 한다.
- 수급자의 정보를 다루는 전 직원은 서비스 관련 상담자 등 외부인이 컴퓨터 모니터 및 문서 등을 볼 수 없도록 자리 배치한다.

### 4. 신체구속 및 행위제한 최소화

- 수급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거나,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 할 수 없다.
- 제1항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본 시설의 각 종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구속 및 행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 5. 수급자 선택권의 존중

- 수급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시설이동 또는 이용종료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불가피하게 본 시설이동 또는 이용종료 시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6. 직원의 신분관련 정보 제공

- 본 시설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직원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전화를 받는 직원은 항상 기관명과 소속 부서, 성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7. 수급자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안내

본 시설의 직원은 수급자가 본 시설과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본 시설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알 권리
- ② 서비스 내용을 설명 듣고, 선택할 권리
- ③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④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⑤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⑥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 8. 수급자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안내

-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⑩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9. 종사자 윤리행동 강령

- 1조 우리직원은 수급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권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폭력, 폭언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 2조 우리직원은 수급자의 개성을 이해하고 수급자 스스로가 선택, 결정한 것을 존중하며 항상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대응한다.
- 3조 우리직원은 수급자의 장애상태, 행동, 성격, 성별, 연령 그 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절대 차별해서는 안된다.
- 4조 우리직원은 수급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으로서 생활하기 위하여 항상 지역의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5조 우리직원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 비밀유지, 재정관리, 또한 사적인 공간과 시간의 확보를 배려하도록 노력한다.
- 6조 우리직원은 항상 수급자의 소리를 잘 듣고 수급자의 고민이나 서비스 제공요구에 대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7조 우리직원은 수급자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잊지 않고 모든 수급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수급자와 함께 만들어간다.
- 8조 우리직원은 서비스 제공자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 유니실버요양원 서비스헌장 ◆

본 지침의 목적은 유니실버요양원(이하 "본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의 사명과 윤리를 확립하여 종사자와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들을 섬기는 자세로 서비스 대상자에게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니실버요양원은 종사자 윤리의 실천을 위하여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매일 아침 종사자 근무교대 시간 및 직원회의 등 종사자 전체가 모이는 장소에서 유니실버요양원 서비스 헌장을 낭독한다.

종사자가 유니실버요양원 서비스헌장을 위배했을 때 시설장은 '사랑의 상처 다듬기' 시간을 통해 헌장의 내용을 심각하게 위배한 직원과 대화 시간을 갖는다. 장기적으로 헌장의 위배사항이 근절되지 않고 반복될 때는 유니실버요양원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경고와 감급, 권고사직, 해고 등의 징계조치를 취한다. 서비스 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어르신들을 항상 공경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는다.**

제2조 **방문하는 모든 고객을 반갑게 맞이한다.**

제3조 **모든 전화통화는 예의바르고 공손하게 한다.**

제4조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은 항상 청결과 정리정돈을 유지한다.**

제5조 **어르신들의 어떠한 요구에도 짜증내지 않고 친절하게 한다.**

제6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제7조 **보호자로부터 특별한 사례비 등 금품을 받지 않는다.**

제8조 **어르신들의 개인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제9조 **각 분야의 유니실버요양원 직원들이 화합하여 어르신들을 섬긴다.**

제10조 **어르신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무엇을 더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 요양보호사 윤리지침

## I. 도덕 및 윤리

### 1. 도덕

- 인간의 행위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신념으로,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의 가르침.

### 2. 윤리

-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 마땅하게 행동하거나 지켜야 하는 도리.

## II. 윤리원칙

###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계획에 따라 행동과정을 결정하는 행동자유의 한 형태.

### 2. 무해성의 원칙

- 우리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

### 3. 선행의 원칙

- 선(善)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 4. 정의의 원칙

- 공정함과 공평함에 관련되는 것으로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준다는 원칙.

## III. 직업윤리

### 1. 소명의식

-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 2. 천직의식

- 현재 자신의 직업보다 다른 사람의 직업이 더 수입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자신의 직업에 긍지를 가지며 본인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는 것.

### 3. 직분의식

-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직분을 다해야 한다는 의식.

#### 4. 책임의식

-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직업인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식.

#### 5. 전문의식

- 직업인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IV. 요양보호업무의 기본원칙

1. 대상자 및 가족들로부터 수집한 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확인하고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2. 가능한 한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4.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5. 대상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서비스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6. 대상자에게 의사소통 불능, 협조 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력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서비스 제공 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시설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8. 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긴다.

### V.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1.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
2. 인도주의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4.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5.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6.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7.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8.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VI. 영양보호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직업태도

어떤 직종이든지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업무에 쉽게 지치거나 의욕을 잃을 수 있으나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영양보호업무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상자로부터 신뢰받는 영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직업적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1. 영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 영양보호대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영양보호서비스 제공시 각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 주고 증진시켜 주어야 한다.
- 대상자의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고 영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영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며 반드시 대상자의 의사를 물은 후 실행한다.

### 2. 영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하며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 영양보호업무는 영양보호사에게 신체-정신적으로 고된 일, 즉 대상자의 배설 요양에서 부터 건강관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쉽게 지치고 짜증이 날 수 있지만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영양보호사 자신을 점검한다.
-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업무가 나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갖는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나의 업무능력의 미숙이나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의 부족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먼저 생각해보고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3. 영양보호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영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 한다.

-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언행과 신뢰받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 자신의 올바른 활동은 모든 영양보호사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한다.

### 4. 영양보호사는 영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시설장이나 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영양보호사는 시설직원, 동료영양보호사,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5. 영양보호사는 원활한 영양보호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는다.
- 자신의 업무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자가 평가와 지도 발전의 자료로 보관한다.

**6.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 신뢰감 형성을 위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 즉, 바른 몸가짐, 바른 동작, 바른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 대상자와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지키며,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해를 구해야 한다.
- 대상자 앞에서는 피로해 보이지 않도록 한다.
-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눈높이에 자신의 시선을 맞춘다.
- 대화는 천천히 하도록 하며 앉는 위치, 몸짓, 손놀림, 신체접촉 등은 상황에 따라 지나치지 않도록 한다.
-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된다.

**7. 요양보호사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다.**

- 대상자, 가족, 타 직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비효율성, 무능력, 반복되는 태만
- 대상자, 가족, 혹은 타 직원들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 지시되지 않은, 비도덕적인, 정직하지 못한 행위
- 알코올이나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려는 행위
-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 물건을 팔거나 공용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 대상자 소유나 공용전화로 사적인 전화를 하는 행위
- 대상자의 기록, 의무기록 또는 직무기록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조, 변조 기록하는 행위
- 대상자를 존중하고 대상자의 위엄이 지켜져야 할 권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
- 대상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대상자의 자연스러운 관심을 내외에 발설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할당된 장소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행위

8. 요양보호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9.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상식선에서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10.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1.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2.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
3. 제공된 요양보호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4.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
5.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한다.
6.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보고 또는 신고한다.

**\*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범하지 않아야 할 행위**

1. 대상자, 가족, 타 직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2.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비효율성, 무능력, 반복되는 태만
3. 대상자, 가족, 혹은 타 직원들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4.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5. 지시되지 않은, 비도덕적인, 정직하지 못한 행위
6. 알코올,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
7.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8.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9.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10. 물건을 팔거나 공용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11.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12.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13. 대상자의 기록, 의무기록 또는 직무기록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조,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 14. 대상자를 존중하고 대상자의 위엄이 지켜져야 할 권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
- 15. 대상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대상자의 사적생활을 내외적으로 발설하는 행위
- 16.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17. 할당된 장소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행위
- 18.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 \* 요양보호사가 갖춰야 할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 1. 대상자와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지키며,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해를 구해야 한다.
- 2. 대상자 앞에서는 피로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
- 3.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4. 대상자의 눈높이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도록 한다.
- 5. 신체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며 너무 과장되지 않도록 한다.
- 6.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 \*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

- 1. 존댓말을 사용하며 예의바른 태도를 가지고 대상자를 존중한다.
- 2. 실수를 하더라도 탓하거나 혼내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한다.
- 3. 자신이 해야 할 업무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4. 유니폼을 착용하고, 매니큐어나 지나치게 큰 장신구 등은 피하도록 한다.
- 5.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의 권리를 보호한다.
- 6. 본인이 제공한 요양보호업무에 대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보고를 한다.

# 간호사 윤리지침

## I. 간호사 윤리선언

우리 간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옹호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에 우리는 간호를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안녕 추구를 삶의 본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간호전문직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최선의 간호로 국민건강 옹호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인간 존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을 포함한 첨단 과학기술의 적용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견지하며,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보건의료종사자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우리는 이 다짐을 성심으로 지켜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II. 간호사 윤리강령

간호의 근본이념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간호사의 임무는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삶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시키고, 고통을 경감하는 것이다.

간호사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전인적 간호중재와 상담, 교육 등을 수행함으로써 대상자의 지식을 증진하여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1. 간호사와 대상자

#### 1) 평등한 간호제공

- 간호사는 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사회적 질병과 장애의 종류를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한다.

#### 2) 개별적 요구 존중

- 간호사는 대상자 개개인의 요구를 존중하며, 각 상황에 맞는 간호를 제공한다.

#### 3) 비밀 유지

- 간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 개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다.

#### 4) 알 권리 및 자율성 존중

- 간호사는 대상자가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설명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고 대상자가 간호행위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한다.

#### 5) 대상자 참여 존중

- 간호사는 대상자를 간호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간호의 전 과정에 그들을 참여시킨다.

#### 6) 취약 계층 보호

- 간호사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 계층 대상자를 옹호하고 돌본다.

#### 7) 건강 환경 구현

- 간호사는 대상자를 환경오염, 빈곤,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함을 사회적 책무로 수용한다.

## 2. 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

### 1) 책무

- 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 업무 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활동에 대한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

### 2) 교육과 연구

- 간호사는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 연구 활동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 3) 전문적 활동

- 간호사는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통해 간호정책과 제도의 발전 및 확립에 참여한다.

### 4) 윤리적 간호 제공

- 간호사는 윤리적으로 온당하지 못한 의료 및 간호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 5) 건강 및 품위 유지

- 간호사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3. 간호사와 협력자

### 1) 협력

- 간호사는 대상자의 간호와 관련된 사람들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며 협력한다.

### 2) 대상자 보호

- 간호사는 협력자에 의해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예상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3) 생명 과학 기술과 존엄성 보호

- 간호사는 협력자가 생명과학기술과 관련된 부적절한 시술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 대상자의 안전과 존엄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 Ⅲ. 간호사 윤리지침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제 정 2007. 2. 23

개 정 2014. 2. 19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한국간호사윤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목적은 대한간호협회가 제정한 '한국간호사윤리선언'과 '한국간호사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안녕을 증진하고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데 있다.

제2조(제반 법령 준수) 이 지침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간호윤리에 관한 선언·강령·지침과 대한민국의 관련 제법령, 대한민국 정부가 조인하거나 승인한 관련 조약과 국제협약 등을 준수한다.

## 제2장 일반적 윤리

제3조(간호사의 사명) 간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며,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는 사명을 갖는다. (본 윤리지침에서 간호대상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포함한다.)

### 제4조(인권 존중)

- ① 간호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목적 자체로 대우하여야 한다.
- ② 간호사는 인간의 윤리적 의무, 법적 권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인간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존경받으며 태어날 권리를 가진다.
2. 인간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가진다.
3.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양도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4. 인간은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5조(윤리적 간호 제공)

- ① 간호사는 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간호대상자를 간호하여야 한다.
- ② 간호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간호대상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간호사는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간호대상자를 떠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간호사는 간호대상자를 간호할 때 소홀함, 부주의, 고의, 악의, 잘못된 정보제공 등으로, 간호대상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건강 및 품위유지)

- ① 간호사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와 명예를 지키고, 법과 사회 상규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간호사는 주류,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및 대마 사용의 상태에서 간호에 임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간호사는 자신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사회 심리적, 영적 건강을 위해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 간호사는 전문직에 부합하는 단정한 용모와 복장, 언행 등을 갖추어 간호사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 ⑤ 간호사는 교차 감염이나 의인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⑥ 간호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혜나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간호사는 간호할 때 간호대상자가 성적 접촉으로 오인하거나 유도될 수 있는 행동과 사적 관계 형성을 피하여야 한다.
- ⑧ 간호사는 간호직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동료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장 대상자에 대한 윤리

### 제7조(평등한 간호제공)

- ①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국적, 인종, 연령, 성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을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종교와 신념,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종교적 관점과 신앙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관습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④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관습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제8조(취약한 대상자 보호)**

- ① 간호사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시설수용자, 불법 체류자, 정신질환자, 극빈자 등 자신의 권익을 위한 주장과 의사결정이 어려운 취약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여야 한다.
- ② 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대상자들이 의료 자원의 분배나 진료 및 간호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여야 한다.
- ③ 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대상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지 않고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 ④ 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대상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간호대상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임상시험심의위원회 (IRB : Institutional Review Board) 등 관련 기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심의규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한다.

### **제9조(개별적 요구 존중)**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신체적, 사회 심리적, 영적 요구 등 개인의 요구에 따라 차별화된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생활 보호)**

- ①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사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 ②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사적인 대화, 간호 처치 및 개인위생 시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간호사는 간호 관련 인력과 간호학생 등이 간호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 ①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의 비밀은 간호사가 간호대상자나 가족, 보건 의료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뿐 아니라

간호사가 관찰한것, 들은 것, 이해한 것 등을 포함한다.

- ② 간호사는 인수인계와 보고 시 간호대상자의 정보가 관계자 외의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 ③ 간호사는 학술 집담회 등에서 사례발표 시 간호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타인과 자신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서명이나 동의 없이 간호나 치료 상황을 녹음·촬영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그러한 상황을 묵인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⑥ 간호사는 직원과 간호학생 등이 간호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12조(의무기록 관리책임)

- ① 간호사는 의무기록, 전자의무기록 및 건강기록부 등 간호대상자에 대한 기록을 방치하거나 소홀하게 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간호사는 간호수행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의무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기록 및 수정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③ 간호사는 모든 형태의 의무기록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자기결정권 존중)

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제반 간호에 대하여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한다. 단, 그 결정이 간호대상자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알권리 존중)

- ① 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나 자신에게 수행되는 간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자신에게 수행되는 진료 및 간호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

사결정에 참여 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간호전문직의 권한과 책임 이외의 정보를 요구할 때 관계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다.
- ④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할 때, 간호대상자의 요구와 관심,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이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간호의 목적,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제15조(가족참여 존중)**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가족을 간호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참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16조(건강환경 구현)**

- ①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전하는 건강환경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을때 이를 묵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강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간호사는 재해위험으로부터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구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17조(인간존엄성 보호와 생명과학기술)**

- ① 간호사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인간중심의 간호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 ② 간호사는 새로운 생명과학기술을 적용받는 간호대상자를 돌볼 때 해당 과학기술의 목적, 이득, 한계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간호사는 다양한 과학기술에 관한 의료기관의 방침과 계획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 ④ 간호사는 기증자에 의한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대리출산 등 보조생식술 사용에 대해 도덕적인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유전정보 노출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전정보 유출을 방

지하여야 한다.

- ⑥ 간호사는 생명복제기술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침해에 대해 인식하여야 한다.
- ⑦ 간호사는 장기 등을 매매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관련 부서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연명의료와 간호)**

- ① 간호사는 연명의료와 간호를 받는 간호대상자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 등을 간호사 자신의 가치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간호사는 연명의료 결정으로 심폐소생술금지 처방이 내려진 간호대상자라도 기본적인 간호는 제공하여야 한다.

### **제19조(임종과정의 환자 간호)**

- ① 간호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간호대상자에게 안위를 제공하고 동반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간호대상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② 간호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간호대상자에게도 수분과 영양공급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통상적인 간호는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간호사는 연명의료를 결정한 간호대상자나 가족, 대리인이 호스피스·완화 간호를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장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제20조(간호표준 준수)** 간호사는 간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직 단체에서 개발한 간호실무표준에 따라 간호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적 책임)** 간호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의해 수행한 간호에 대해 그 정당성을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 **제22조(간호업무의 위임)**

- ① 간호사는 간호행위를 위임할 경우에 위임받는 자의 자격과 업무능력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하며, 그 위임하는 간호행위의 범위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 ② 간호사는 무자격자에 의한 간호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간호사는 교육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학생에게 간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 제23조(옹호자 역할 수행) 간호사는 보건의료인, 가족 등의 의사결정이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간호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간호대상자의 편에 서서 권익을 옹호하여야 한다.

### 제24조(비윤리적 행위 거부)

간호사는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뇌사와 장기이식, 임종과정의 환자 치료 및 간호 등과 관련하여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행위에는 참여를 거부하여야 한다.

### 제25조(비윤리적 행위 보고)

- ①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으로부터 불법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간호대상자의 안녕이 위협받거나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나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비공인 간호행위 금지)

간호사는 근거중심의 간호를 수행하여야 하며, 간호학계에서 공인하지 않은 새로운 간호요법과 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간호사의 자기개발)

- ① 간호사는 원만한 인간관계와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간호사는 건강교육자로서 건강행위의 실천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
- ③ 간호사는 계속 학습을 통해 직무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간호사는 시·도간호사회, 의료기관, 분야별 학회, 연구회 등에서 주관하는 연수, 보수 교육

에 참여하여 새로운 간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여야 한다.

### **제28조(간호연구 활동)**

- ① 간호사는 간호지식체계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활동에 참여할 경우,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연구결과를 실무에 활용하여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간호연구자는 연구 참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간호연구자는 연구과정 및 결과와 관련해 연구대상자의 사생활과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간호연구자는 연구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 연구과정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9조(전문직 단체 활동)**

- ① 간호사는 전문성 향상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과학회 등전문직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② 간호사는 전문직 단체를 통하여 바람직한 간호실무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공정한 근무조건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② 간호사가 전문직 단체행동에 참여할 때는 간호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30조(간호정책 참여)**

- ① 간호사는 간호관련 정책의 형성과정과 입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한다.
- ② 간호사는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 ③ 간호사는 국가의 보건의료환경에 관한 제도나 정책의 수행과정을 감시하여야 한다.

### **제31조(정의와 신뢰의 증진)**

- ①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자원과 사회 경제적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그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
- ② 간호사는 사회의 요구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로 임하며 윤리적인 행위로 반응하되, 간호전문직 가치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공동선을 지향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신뢰를 증진시키는 역할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장 협력자에 대한 윤리

### 제32조(관계윤리 준수)

- ①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고유한 역할과 직무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직무상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간호사가 다른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을 때, 서로 협력하며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③ 간호사는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상호 비방, 모함, 사생활 공개, 폭력 등의 언행을 삼가고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④ 간호사는 보건의료인 등 협력자와 갈등이 있을 때 간호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 ⑤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을 수행하기 전에 처방이 간호대상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의사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33조(대외협력)

- ① 간호사는 국민의 건강요구 충족을 위한 지역적·국가적·국제적 노력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간호사는 사회 재난 및 국가 위급 상황에서 간호사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윤리지침**

## 전문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 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1장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 1. 전문가로서의 자세

-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 취향.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 3)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 6)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 7)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 2)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3)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4)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 는 안 된다.
- 5)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3.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 는 안 된다.
-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 야 한다.
- 3)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 2장 사회복지사의 수급자에 대한 윤리기준

### 1. 수급자와의 관계

-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 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5)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 6)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 7)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8)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 9)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 2. 동료의 수급자의 관계

- 1)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 2)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 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 3장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 1. 동 료

- 1)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2)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 3)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 4)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 5)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6) 사회복지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수퍼바이저

- 1) 수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2) 수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

에 대한 평가는 저들과 공유해야 한다.

- 3) 사회복지사는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
- 4)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4장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5장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6장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 선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물리치료사 윤리지침

## 1. 물리치료사의 정의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사용, 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고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치료는 수술 및 화학요법(약물요법)이 아닌 전기, 광선, 물, 공기, 소리 및 운동요법과 각종 기구 및 기계등 물리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이를 치료목적으로 개발하여 환자에게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기능을 회복시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물리적인 치료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 2.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인체외부에 물리적인 힘이나 자극을 가하는 물리요법적 치료방법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약물을 인체에 투입하는 치료나 인체에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치료 또는 수술적인 치료방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3. 물리치료사의 윤리강령

- ① 물리치료사는 민족, 지역, 인종, 종교, 성별, 신분의 차별없이 전 인류에게 봉사한다.
- ② 물리치료사는 지역사회주민의 건강증진과 장애예방을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 ③ 물리치료사는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학연구활동에 앞장선다.
- ④ 물리치료사는 고통받는 환자와 아픔을 함께 나누며 친절과 정성으로 책무를 다한다.
- ⑤ 물리치료사는 전문직업인이라는 자긍심과 사명의식을 갖고 타의 귀감이 된다.
- ⑥ 물리치료사는 직무상 알게된 환자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⑦ 물리치료사는 그 개인의 권위나 이름이 상업적 광고에 이용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 ⑧ 물리치료사는 동료회원은 물론 타 유관단체와도 친목을 도모하여 협화를 유지한다.
- ⑨ 물리치료사는 회원공동체 바탕위에 본회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다.
- ⑩ 물리치료사는 물리의학발전을 위하여 국제협력 아래 최신기술 정보교류에 동참한다.

## 4. 수급자에 대한 윤리 지침

- 수급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 물리치료사는 항상 올바른 근무 자세와 태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수급자와의 대면은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해야 한다.

- 치료실 내에서는 자세 및 언행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 수급자에게 서비스의 내용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제공하고 존중한다.
- 치료실은 항상 쾌적하고 청결하며 안정적 분위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 치료사의 근무복장은 시설 근무복장, 가운으로 단정하게 차려 입는다.

## 5. 물리치료 적용 시 주의사항

1. 낙상위험이 있는 클라이언트는 항상 주의깊게 관찰한다.
2. 자리를 잠시 비울 시에는 동료 치료사 혹은 보호자에게 클라이언트의 안전 치료사항 등을 부탁한다.
3. 휠체어에서 침대 등으로의 이동 시 치료사가 직접 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4. 당뇨/감각저하/골다공증/주의산만한 클라이언트 등은 특별히 관리.
5. 치료실 내 (평행봉 등)에서 미끄러짐에 주의.
6. 경사기울기 등의 치료기기 사용시 클라이언트들의 상태 주의.
7. 치료기기는 사용 전에 점검을 하고, 강도는 서서히 올려 쇼크를 예방한다.
8. 전기치료기 에 의한 수포 발생과 화상에 특히 주의한다. (당뇨, 감각저하 클라이언트 등)
9. 운동치료기구의 사용은 치료사의 지시하에 사용
10. 관절운동 치료 시 골절 등의 부작용 주의

## 6. 물리치료실의 안전수칙

1. 항상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
2. 깨끗하고 마른 상태로 유지.
3. 젖은 바닥에는 주의표지판을 둔다.
4. 액체를 엮지른 경우에는 즉시 청소한다.
5. 화장실이나 샤워장 같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 처리를 한다.
6. 조명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불이 꺼진 병실에는 손전등을 이용한다.
7. 청소시 물기를 잘 제거하고, 보드나 매트를 이용하여 보행자 통로를 확보한다.
8. 계단을 오를 때는 손잡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급하게 올라가지 않으며, 필요시 항상 도움을 청한다.
9. 통로는 깨끗하게 유지 보수하고, 전기제품의 코드가 통로를 가로질러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조리사 윤리지침

## 1. 조리사의 정의

조리란 식품에 물리적 및 화학적 조식을 가하여 합리적인 음식물로하는 과정, 즉 식품을 위생적으로 적합한 처리를 한 후 먹기좋고 소화하기 쉽도록 하며 또한 맛있고 보기 좋게하여 식용이 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하며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를 "조리사"라 지칭한다.

## 2. 조리사 윤리강령

1. 조리사는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 식문화의 개선 향상에 목표를 둔다.
2. 조리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한다.
3. 조리사는 지속적인 연구활동으로 우리전통 음식을 세계화 시키는데 앞장선다.
4. 조리사는 향상된 서비스를 위해 모두 하나되어 봉사정신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한다.
5. 조리사는 개인의 창의력과 전문성을 키워 이 땅의 조리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6. 조리사는 조리인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고 계승 발전시킨다.
7. 조리사는 조리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각종 질병 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8. 조리사는 모든 유관기관 및 단체와 상호 협력하고 관계법규 및 윤리 강령 준수에 솔선한다.

## 3. 수급자에 대한 윤리

- 조리인은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식품 및 환경 위생과 음식조리에 최선을 다한다.
- 조리인은 수급자에 대해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 조리인은 지속적인 조리기술 습득 및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어르신의 만족도 향상과 건강의 유지, 증진에 힘쓴다.



- 조리인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 조리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수급자, 대상자의 가족 다른직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협조하며 수급자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한다.
- 조리인은 참지식과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조리인은 음식문화의 세계화와 서비스정신으로 관광산업에 선두주자가 된다.
- 조리인은 참된 봉사활동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다

## 4. 일반적 의무와 권리

-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헌신하며, 특히 소외된 자들의 영양상태 개선에 앞장선다.
- 조리사는 자기 개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 하는데 힘쓴다.
- 조리사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개인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 존중하며,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5. 직업관

- 조리사는 고객에게 최상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신 지식과 기술 습득에 힘쓰고 이를 활용하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다.
- 조리사는 스스로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조리사는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 자격에 적합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조리사는 모든 사람의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사상,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동등한 영양서비스를 제공한다.
- 직무상 고객과의 관계에서 얻어진 정보는 국민건강증진 및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조리사는 어떠한 불의나 부도덕한 행위와 타협하지 않고, 국민건강지킴이로서 자긍심을 갖고 맡겨진 책임을 다한다.
- 조리사는 다른 보건의료전문인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며, 상호 협조한다.
- 조리사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 6.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역할과 임무

- 조리사는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학문 연구와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 조리사는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국민영양개선사업에 참여하고, 국가영양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조리사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영양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는데 힘쓴다.

## 7. 소속기관에 대한 책무

- 조리사는 대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협회 및 조리사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다른 회원들과 서로 협조한다.
- 조리사는 소속기관의 규범을 따르며, 직무에 충실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